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96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황정아·박용갑·김문수

맹성규 • 이성윤 • 이언주

양부남ㆍ허종식ㆍ정성호

박민규 • 김준혁 • 김우영

송기헌 · 권칠승 의원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있음.

그러나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음. 또한,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일을 3년 유예함으로써 AI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

법률 제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부칙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제1조(시행일)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	
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	
6년 1월 24일부터 <u>시행한다</u> .	시행하고, 제
	3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u>시행한다</u> .